

예산총칙

제1조 :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310,794,562	9,323,837
1. 일반회계	302,471,503	9,074,145
2. 특별회계	8,323,059	249,692
의료보호기금	700,166	21,005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2,037,992	61,140
주차장	4,348,924	130,468
주거환경개선사업	230,002	6,90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528,400	15,852
기반시설	92,500	2,775
지하수관리	385,075	11,552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3,249,193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